

#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

글 : 농림수산물부 보도자료  
(2013.02.20)

## 〈요약〉

### - 기본원칙 -

- ◆ 先,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→ 後, 환경규제 강화 ◆
-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
-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

-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\*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
  -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제 간,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
-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,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, 약 80%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  -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(일명 썬라이트) 재질 지붕, 가축 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
  - 닭·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,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
  -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,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, 지자체별 견폐울 운영개선, 축사거리제한 재설정,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

- 농림수산물부(장관 서규용), 환경부(장관 유영숙) 및 국토해양부(장관 권도엽)는 범 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‘무허가 축사 개선대책’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### - 기본원칙 -

- ◆ 先,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→ 後, 환경규제 강화 ◆
-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
- 4대강 수계·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,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

-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·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\*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

\*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('11.9월) : 17,720호 중 무허가 축사 9,925호(44.8%)

- 소는 비 가림,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함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(최대 60%\*)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\*\*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으로 작용하고,
  - \*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축사시설의 건폐율(20~40%)을 60%까지 확대
- \*\*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(가구의 최소단위는 5~10호 기준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), 상수원보호구역, 수질환경보전지역, 4대강 수계 등
- 돼지는 타 축종에 비해 대규모의 가축분뇨처리 시설 또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 등이 필요함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여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며,
- 닭이나 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, 축사는 바닥을 방수 처리해야 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어 무허가 축사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고
- 지난 '92년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 법적절차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추진\* 조치한 사례가 있었으나, 무허가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는 미치지 못한 바 있음
  - \*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, 원상복구가 국가적으로도 불이익한 경우 법적절차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제도(건폐율 등 기본질서 미 위반시)
- 또한, 축산업 허가제·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축산에 대한 관리·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입법예고('12.5월) 되었음
- 이에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팽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 발효

시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

-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先,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하고, 後,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
- 관계부처(농식품부·환경부·국토해양부) 합동으로 7차례의 실무협의회, 4차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총리실 조정 회의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'무허가 축사 개선대책'을 마련하였음
- 이번 '무허가 축사 개선대책'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건폐율을 60%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,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(20~50%)한 지자체\*에 대해 조례 제정 또는 상향설정을 권고함으로써 건폐율 운영 개선
    - \* '12.10월 기준, 162개 시·군 중 60%는 104개소, 20~50%는 47개소, 미 제정은 11개소
  - ② 축사용 가설건축물\*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\*\*되고 있으나, 벽과 지붕재질에 합성수지(일명 썬라이트)를 추가하고,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도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여 건폐율 초과 문제 완화
    - \*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아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
    - \* 건축법 시행령 제15조(가설건축물)제5항제10호 :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, 가축운동용,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
  - ③ 육계·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양겨 등

» 집중탐구

수분 조절재를 도포한 후, 재 입식때 즉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,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가금류 무허가 축사가 가설 건축물로 전환 가능

- ④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을 젓소 이외에 한·육우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건폐율 부족 일부 해소
- 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·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나, 상당수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요인 중 축사거리제한\*으로 인해 인·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개정 시 한시적으로 유예\*\*(법 시행후 2년)함으로써 적법화 장애요인 해결
  - \*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: 소·말 100m, 젓소 250m, 돼지·개·닭·오리 500m
  - \*\*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
- ⑥ 이외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정·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, 소방 관련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
  - 농식품부는 축산 현실에 적합한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·축산분뇨 규

제와 진흥 주체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,

-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,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, 약 80% 수준 적법화\*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
- \* 가설건축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돼지 컨테이너 확대 적용을 제외한 개선방안 적용 조사결과('12. 12월), 약 71% 수준 적법화 가능할 것으로 파악
- 끝으로, 관계부처 담당자는 이번 '무허가 축사 개선대책'에 따른 법령개정 및 제도이행 등 후속 조치가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,
  - 올해 3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·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
  - 다만,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\*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
  - \* 축사거리제한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, 수질 환경보전지역, 4대강 수계 등

참고 1      예상 질의, 답변

1. 금번 '무허가 축사 개선대책'으로 인한 구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20%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입장은?

- 금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이후\*에 축사를 설치하였거나, 타인 토지 점유 등 법을 위반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
  - \*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전을 명할 때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및 재정적

지원·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 실시

- 타 분야와의 형평성, 준법정신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
- 다만,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전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

## 2.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률인데,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?

- 금번 “무허가 축사 개선대책”은 관계부처의 실무협의(7차례), 현지 실태조사(4차례) 및 총리실 주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임
- 관계부처별 역할,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유지를 하는 한편,
- 분기별로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

## 3.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계획은?

- “무허가 축사 개선대책” 확정(2월) 후,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순회설명회를 개최(3월)할 계획임
-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사폐쇄 명령 등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,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,
-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임

## 4. 축산농가에서 언제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는지?

-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, 금년 10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환경부,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조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다만, 입지제한 지역 내 축사·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

## 5.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?

- 관련 법령 개정 후, 개별농가에서 축사현황을 측량하고, 시·군 민원실에 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”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
- 시·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후,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,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

참고 2

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

①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

□ (현행)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%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,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(20~50%)

\* 162개소 중 60% : 104(64%), 20~50% : 47(29%), 미 제정 : 11(7%)

□ (개선방안)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,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 구축

②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

□ (현행)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

□ (개선방안)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(일명 썬라이트),

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○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동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,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의무화

③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

□ (현행) 육계 · 오리 등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

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

○ 흙바닥에 수분조절재(왕겨 등)를 도포하여 사육하고,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,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

□ (개선방안)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하고, 재입식 때 분뇨를 위탁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\*

\*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

④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

□ (현행)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,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

□ (개선방안) 환경부 ·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

⑤ 운동장 적용 확대

□ (현행)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

□ (개선방안) 젖소 뿐만 아니라 한 · 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\*

\*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

⑥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

□ (현행)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 ·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\*으로 인해 인 · 허가 불가

\*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: 소 · 말 100m, 젖소 250m, 돼지 · 개 · 닭 · 오리 500m

○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

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

□ (개선방안) 가축분뇨법 개정시 '축사거리제한'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

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

○ 시 · 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\*

\*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계획

※ 소방 관련시설 개선은 소방방재청 협조하에 법령 개정 추진(2월)

**참고 3** 과제별 추진일정(안)

세부과제	'13년											'14	'15	'16	
	2	3	4	5	6	7	8	9	10	11	12				
●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															
- 개선대책(안) 통보, 협조 요청	■														
- 개선대책 언론 브리핑	■														
- 관계기관 순회 설명회		■													
- 세부추진계획 확정, 통보		■													
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															
-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			■	■	■	■	■	■							
- 건축법 시행령			■	■	■	■	■	■							
- 건폐율 운영 개선			■	■	■	■	■	■							
- 거리제한 재설정 연구용역												■			
● 무허가 축사 적법화															
-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										■	■	■	■	■	
- 배출시설 신고·허가										■	■	■	■	■	
- 가설건축물 축조 완료										■	■	■	■	■	
● 사후관리 체계 구축															■

참고 4 관계기관별 역할

기관명	역할
농림수산식품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 부처 “무허가 축사 개선대책” 마련</li> <li>○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 자료 준비</li> <li>○ 지역별 순회설명회 계획 수립 및 추진</li> <li>○ 축산업계 등 관련기관 홍보 및 교육</li> <li>○ 무허가 축사 재발장지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</li> <li>○ 기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업무 총괄</li> </ul>
환경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</li> <li>○ 지역별 순회설명회 참여 및 추진계획 설명</li> <li>○ 축사거리제한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</li> </ul>
국토해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법 시행령 개정</li> <li>○ 지역별 순회설명회 참여 및 추진계획 설명 등</li> </ul>
소방방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</li> </ul>
시·도(시·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홍보</li> <li>○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,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</li> <li>○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</li> </ul>
농협중앙회 축산환경자원화협회 생산자단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분뇨법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홍보</li> <li>○ 무허가 축사 개선 절차 및 방법 교육·홍보 등</li> </ul>

## 참고 5 무허가 축사 개선절차(가설건축물 축조신고)

### 1. 축사현황 측량

- 시·군 소재 지적공사를 통해 농장 내 전체 축사현황 측량
- ※ 측량비용 : 건축면적 × 공시지가(축사면적 1,500㎡ 이하, 공시지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약 27만원 소요 예상)

### 2.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

- 시·군 민원실에 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” 제출
- ※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작성(배치도, 평면도, 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대지사용승낙서 첨부)

### 3.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

- 시·군 환경업무 담당과에 “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”, “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”, “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” 또는 “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” 제출
- ※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,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 작성하되, 가설건축물에서 닭·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위탁계약서 제출시 설치의무 면제

### 4.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존치기간 연장

-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후,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, 열람 가능
-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허가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, 신고대상은 7일 전까지 신고
- ※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